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8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4.

발의자 : 이만희 · 구자근 · 서천호

김기웅 · 엄태영 · 강선영

서지영 · 조은희 · 권영진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작물재배업 · 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경기침체, 고물가 · 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